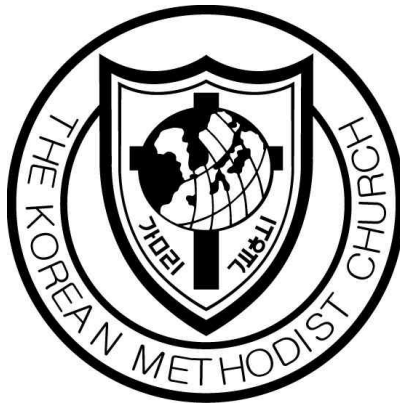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공 청 회



- 1 차 (대전) ❖ 일 시 : 2015. 8. 13(목)오후 2시
❖ 장 소 : 하늘문교회 (담임목사 이기복)
(☎ 042) 525 - 3141~3)
- 2 차 (서울) ❖ 일 시 : 2015. 8. 17(월)오후 2시
❖ 장 소 : 종교교회 (담임목사 최이우)
(☎ 02) 6322 - 2100)

기 독 교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대한감리회

목

□ 일정표	3
□ 개회예배순서(1차)	4
□ 개회예배순서(2차)	5
□ 감독제도 개선안(1분과)	6
1. 감독회장 2년 전임 / 2년 겸직	
2. 연회,지방통합의 건	
3. 연회감독 / 연회장	7
□ 본부조직 개편안	7
□ 서부연회 폐지	8
□ 연회, 총회 인사위원회 설치	
□ 입법회의의 독립과 입법절차의 보완	
□ 경 제 법 (2분과)	9
□ 교역자 은급법	9
1. 교회 은급 부담금	
2. 교역자 부담금	
3. 은급금 기준금	
4. 소속 및 기관 목회자 은급규정	10
□ 과 정 법	10
□ 재판법:사법권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3분과)	11
□ 선거법:선거제도 개선	11

일 정 표

- 1차(대전) : 2015 년 8 월 13 일(목) 하늘문교회
- 2차(서울) : 2015 년 8 월 17 일(월) 종교교회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4 : 00 ~ 14 : 20	개 회 예 배	1 차	▶ 사 회 : 유재성 서기 ▶ 기 도 : 염정식 3분과서기 ▶ 설 교 : 김충식 위원장 ▶ 축 도 : 이기복 목사
		2 차	▶ 사 회 : 박재홍 부서기 ▶ 기 도 : 지기석 1분과서기 ▶ 설 교 : 김충식 위원장 ▶ 축 도 : 석준복 목사
14 : 20 ~ 15 : 00	1. 감독제도 개선안 2. 연회(지방)통합 3. 본부구조 개편 방향 4. 서부연회 폐지 5. 입법의회 독립과 입법절차 보완 6. 연회감독/ 연회장 호칭 문제	1 차	1분과 : 이기복 1분과위원장
		2 차	1분과 : 지기석 서기
15 : 00 ~ 15 : 40	1. 경제법 2. 교역자 은급법 3. 과정법	1 차	2분과 : 박재홍 서기
		2 차	2분과 : 석준복 2분과위원장
15 : 40 ~ 16 : 20	1. 선거법 2. 재판법	1 차	3분과 : 염정식 서기
		2 차	3분과 : 원기배 3분과위원장

❖ 각 분과별 발표 10분 , 질의응답 30분

개 회 예 배

1차 예 배

- 일 시 : 2015년8월13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하늘문교회(담임목사 이기복)

○ 사 회 / 서 기 유 재 성 위 원

- ❖ 조용한 기도----- 다같이
- ❖ 찬 송 ----- (595장)----- 다같이
- ❖ 기 도 ----- 열정식 위원(3분과 서기)
- ❖ 성경봉독 ----- 에베소서 2:22 ----- 사회자
- ❖ 설 교 ----“함께 세워가는 교회”---김충식 목사(장정개정위원장)
- ❖ 광 고 ----- 사회자
- ❖ 축 도 ----- 이기복 목사

찬송가595

- 1.나말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영혼 구원 얻도록 잘인도 함이라.
- 2.부르심 받들어 내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정성 다하리.
- 3.주앞에 모든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때 상받게 하소서.
- 4.나항상 깨어서 늘기도 드리며 내믿음 변치 않도록 날도와 주소서.

성 경 본 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개 회 예 배

2차 예 배

- 일 시 : 2015년8월17일(월) 오후 2시
- 장 소 : 종 교 교 회 (담임목사 최이우)

○ 사 회 / 부 서 기 박 재 홍 위 원

- ❖ 조용한 기도----- 다같이
- ❖ 찬 송 ----- (595장)----- 다같이
- ❖ 기 도 ----- 지기석 위원(1분과 서기)
- ❖ 성경 봉 독 ----- 에베소서 2:22 ----- 사회자
- ❖ 설 교 ----“함께 세워가는 교회”---김충식 목사(장정개정위원장)
- ❖ 광 고 ----- 사회자
- ❖ 축 도 ----- 석준복 목사

찬송가595

- 1.나말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영혼 구원 얻도록 잘인도 함이라.
- 2.부르심 받들어 내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정성 다하리.
- 3.주앞에 모든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때 상받게 하소서.
- 4.나항상 깨어서 늘기도 드리며 내믿음 변치 않도록 날도와 주소서.

성 경 본 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장정개정위원회 1분과 공청회 자료

1. 감독회장 제도

○ 2년 전임제 개정안

감독회장의 권한을 분산·조정하여 감독회장은 행정수반으로서 본부 운영에 전념하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단 2년 임기를 마치고 은퇴 할 때는 어떤 예우도 하지 않는다.

제 2 편 현 법		
현행	개정안	비고
1안 【82】 제17조(감독회장)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u>2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u>	

○ 2년 겸임제 개정안

감독회장은 영적 지도자이며, 동시에 개체교회를 담임하므로 영성을 유지하며, 본부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다.

제 2 편 현 법		
현행	개정안	비고
2안 【82】 제17조(감독회장)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u>2년, 단임으로 하되,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다.</u>	

2. 연회를 통합하자는 개정안

○ 연회를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안

- 1) 지금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2) 연회마다 개성을 따라 독특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3) 거대 연회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 된다.

○ 연회를 통합하자는 안

- 1) 현재 11개의 연회를 5-6 개의 연회로 통합하자.
- 2) 인구 감소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 3) 통합된 연회는 부담금 0.5%로 운영하므로 년 간 35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4) 부담금 인상 없이 선교, 교역자은급, 교역자생활보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3. 지방회를 통합하자는 개정안

○ 지방회를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안

- 1) 자칫 감리사 선거가 과열되어 지방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 2) 지방회의 거대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지방회를 통합하자는 개정안

- 1) 1개 지방회의 규모를 40개 교회 정도로 조정하면 지방회가 현행 200여개에서 100개 내외로 줄어들고, 지방회 운영비를 절감하여 선교, 교역자 은급 또는 교역자 생활보장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연회장 / 감독 제도

○ “감독”이라는 명칭을 유지하자는 현행안

- 1) 감리교회의 특색있는 감독 제도를 유지 한다.
- 2) 감독을 연회장으로 할 경우 다른 명칭도 지방회장 총회장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 “연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

- 1) 감독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게 됨으로 많은 연회원들이 선호하고 있다.
- 2) 감리교회를 가시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안이다.

제 2 편 헌 법		
현행	개정안	비고
3안 【83】 제18조(감독)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감독(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없다</u>	

5. 본부 구조 개편 안

○ 인원총량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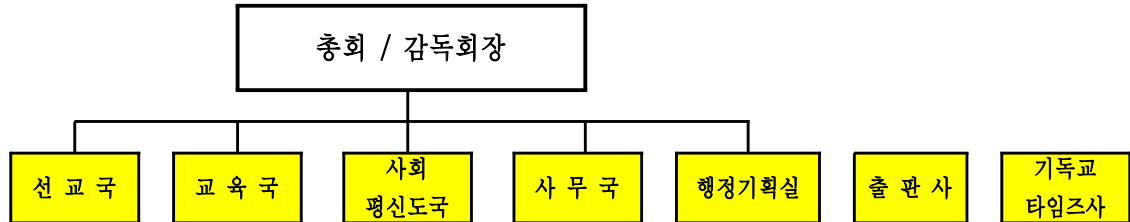
- 1) 직원 감축은 계약직을 연장계약하지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 2) KMC출판국과 기독교타임즈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어떠한 재정지원도 하지 않는다.
- 3) 현재 81명의 본부 직원(기독교타임즈, 출판국 직원 제외)은 향후 5년 동안 15명 감축을 유도하여 2020년에는 총인원 66명이 되게 한다.

* 감축인원 15명에 대한 예산 절감액(추정) : 연간 약 7억여원 이상

○ 감리교 본부 구조조정 기본 방향

- 1) 본부의 각 국 위원 및 이사는 연회당 1명씩 목회자와 평신도를 격 번제로 선출한다.
- 2) 현재의 본부를 4국 1실 2사로 개편한다.
 *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 행정기획실, / 출판사, 기독교타임즈사,
- 3)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 로 연장됨으로서 57세 이상이 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다만 임기제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부 조직표 >



6. 서부연회 조직과 업무를 선교국으로 이관한다.

- 1) 서부연회의 업무를 선교국으로 이관하여 대북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전환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한다.

7. 연회, 총회 인사위원회설치

- 1) 연회나 총회 인사의 공정성 제고
- 2) 감리회 내 유능한 인재를 발굴 등용하므로 감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음
- 3)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인적 자원의 순환이 가능해 짐.

8. 입법회의의 독립과 입법절차의 보완

- 1) 현 총회 산하 입법의회를 별도로 독립시킨다.
- 2) 입법의회 의장은 연회 감독 중에서 호선한다.
- 3) 연회 1/3 이상, 입법회원 1/5이상, 소관 분과위원회로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조정함
- 4) 헌법·법률 제 개정안을 입법의회 개최 150일 전까지 입법의회 의장에게 접수함.
- 5) 입법의회 의장은 접수된 안건을 소관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60일 이내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분과위원회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 6) 장정개정위원회 의결로 발의하는 경우 발의자는 장정개정위원장이 된다.
- 7) 입법의회 의장이 장정개정안을 공고한다.
- 8) 입법의회는 의안의 의결이 있을 후 서로 저축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9) 입법의회에서 의결된 장정은 감독회장이 20일 이내에 공포하되 감독회장이 그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입법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9. 미주특별연회 자치를 위한 개정안

- 1) 미주특별연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 2) 미주특별연회는 자치법을 스스로 입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한다.
- 3) 다만 자치법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장정개정위원회 2분과 공청회 자료

장개위 제2분과에 주어진 장정 제5편 경제법,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10편 과징법 중에서 은급법을 비롯하여 그간 정리된 내용들을 보기에 간편하도록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보고 드립니다.

미진한 사항들은 여론 수렴 등의 보완작업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법>

1. 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위하여, 통계표를 기초로 당 연회 입교인 1인당 평균 헌금액이 70% 이하인 교회는 실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불응 시에는 당해 년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실사기구는 총회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2. 미자립 교회 교역자 기초생활 보장 부담금
그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지만, 부담금 형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아 연구기로 한다.
3. 신학대학 부담금의 건
신학대학교 부담금을 0.5%씩 3회
4. 애향숙 학교법인 부담금의 건
0.3% 1회

<은급법>

1. 교회 은급부담금
 - 1) 현행 1.5%에서 0.5%의 인상 및 본부부담금 0.5%를 전입함으로써 2.5%로 한다.
 - 2) 교회 부담금 최저액은 50만원으로 한다.
2. 교역자 부담금
 - 1)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교역자가 공히 2년마다 1회씩 1개월 분의 생활비를 납부한다.
 - 2) 교역자 최저 부담금은 100만원으로 한다.(2년간)
 - 3) 준회원 허입 부담금 최저액은 60만원으로 한다.
 - 4) 미래에셋에 가입한 교역자들이 미납한 3회 분의 교역자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한다.
(미납 시 목회연한에서 제외한다.)

3. 은급금 기준금

- 1) 1년에 23,000원으로 40년까지만 인정
- 2) 자원 은퇴시 잔여기간은 은급금 지급하지 아니한다.(현행은 50% 지급)

4. 소속 및 기관목사(본부 연회 직원 포함) 중 연금 수령자(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에게도 100% 지급하되, 기관에서 시무한 기간은 50%를 지급한다.

<과정법>

1. 수련 전도사가 2년 후 무조건 교회를 떠나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결코저 함.
2년 후라도 시무하는 교회가 원하면 부목사로 파송 받을 수 있고, 타 교회나 기관으로 파송받을 수 있다.
2. 학원선교사의 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다.

장정개정위원회 3분과 공청회 자료

1. 재판법 :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변경

- 1) 구역과 지방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연회, 총회 및 총회특별재판위원회로 구성
- 2) 감독 ·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이 총특재 단심제로 되어있는 것을,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1심, 총특재에서 2심제로 변경.
- 3) 재판과 심사위원 선출방법

○ 연회

감독 및 지방감리사가 교역자, 평신도, 변호인 또는 법 전문인을 각 1명씩 추천하여 연회실행위에서 추천을 통하여 심사 및 재판위원과 연회 심사 및 재판 위원을 선출하여 인준을 거쳐 감독이 임명.

○ 총회

감독회장 및 각 연회에서 교역자, 평신도, 변호인 또는 법문인을 각 1명씩 추천하여 총실행위에서 추천을 통하여 심사 및 재판위원으로 선출하여 인준을 거쳐 감독회장이 임명

* 재판과 심사위원은 총회, 입법의회 회원 및 각급 위원회(이사회포함)등 겸직 불가.

(자치단체 회장 및 총무포함)

* 임기 3~5년 (위원들에게 장정 특히 재판법에 대한 연수를 강화)

- 4) 행정재판위원회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폐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전담.
장정유권해석도 2심제 도입.

2. 선거법 :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 1) 연회에서 감독 · 감독회장 선거를 하고 총회에서 취임,
지방회에서 감리사 선거를 하고 연회에서 취임
- 2) 선거권자 :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전체로 확대.(준회원제외)
감리사는 지방회원 전체.
- 3) 선거운동원제도 폐지.
- 4) 선거운동 금지사항 기간을 당해년도에서 2년으로 연장.
- 5)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